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20244
----------	-------

제안연월일 : 2026. 7.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 (제출)	발의일	심사경과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012	조인철 의원	2026.02.25.	-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2026.04.0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심사소위 회부 -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법안심사소위(2026.04.30.)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389	황정아 의원	2026.04.16.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04.29.) -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법안심사소위(2026.04.30.)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나.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법안심사소위 (2026.04.30.)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다.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 05.07.)는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대 과학기술원(과기원)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중추적 수행기관으로서 연구 수행뿐만 아니라, 연구성과의 활용·확산에 관한 공적 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5월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과기원 연구자의 연구자적 지위와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라는 이중적 지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규정은 과기원 연구자의 기술이전 및 창업 활동에 실질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연구성과 사업화 정책 방향과 상충될 뿐 아니라, 사립대학 교수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는 측면도 있음.

이에 과기원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거나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연구성과의 활용·확산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의 실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울산과기원은 소속 교원 및 임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이 울산과기원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창업기업등에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창업기업등에 울산과기원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 중 제24조에 따른 비밀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의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3.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생략)	제2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u>울산과기원은 소속 교원 및 임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이 울산과기원의 보유 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u>
<u><신 설></u>	1. <u>창업기업등에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u>
<u><신 설></u>	2. <u>창업기업등에 울산과기원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 중 제24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지 아니 하는 범위의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u>
<u><신 설></u>	3. <u>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u>